#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95

2021. 4. 30.(금)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상돈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1년 4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16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4월 23일

-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상돈 의원)

#### 가. 제안사유

O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기반 조 성과 도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O 이스포츠의 정의 (안 제2조)
- O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 O 이스포츠 진흥사업 (안 제5조)
- O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운영 (안 제6조)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이 조례안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기반 조성과 도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 고자 하는 것임.
- O e스포츠 혹은 이스포츠라고 불리우는 경기는 컴퓨터 혹은 콘솔로 이루어지는 비디오게임을 말하며 e스포츠의 종주국은 미국과 대한민국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스포츠는 매우 높은 실력을 자랑하고 있음.
- O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6개의 금메달이 e스포츠에 배정되면서 게임산업업계는 물론이며 아직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20대초중반 국내 e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혜택이 국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시범종목으로 채택)

#### ○ 우리나라 지자체 동향을 살펴보면

- 경기도는 광명시가 구축 중인 미디어 문화콘텐츠 단지에 올해 경 기게임문화센터와 이스포츠 트레이닝센터를 조성할 예정.
- 광주광역시는 이스포츠(e-Sports)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이스포츠 산업 교육원을 조성·운영할 계획 발표 (3.14)한 바 있음.
- 이스포츠 산업 교육원 조성·운영사업은 이스포츠 산업 분야 직

업 창출,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 문화확산을 견인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지난 2020년 12월 개관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 활성화와 게임·이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계획임.

-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여 이스포츠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이스포츠는 미래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정적인 부분들은 최소화 하고 긍정적인 부분,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최대한 키워나가야 하며, 특히 2022년 광저우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이스포츠가 채택된 만큼 향후 올림픽종목 채택도 예상되며 이스포츠를 즐기는 인구 또한 더욱 증가할 것이며 관련 산업도 발전할 전망이 우세함.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도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 론 요 지: "생략"
- 6.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 O 제5조제5호 중 "이스포츠의 저변"을 "이스포츠와 장애인 이스 포츠의 저변"으로 한다.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O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원안)」
- O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수정안)」

의안번호	제 695 호
의 결	년 월 일
연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발 의 자	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4월 13일

#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5

발의연월일 : 2021년 4월 13일

발 의 자: 박상돈, 임영은, 이옥규,

심기보, 오영탁, 육미선,

이상욱

#### 1. 제정이유

O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 기반 조성과 도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자 함.

#### 2. 주요내용

- O 이스포츠의 정의(안 제2조)
-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O 이스포츠 진흥사업(안 제5조)
- O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운영(안 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입법예고 : 2021. 3. 31. ~ 2021. 4. 5.

####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원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이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스포츠를 말 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이스포츠 진흥계획 (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및 선수육성
- 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유관 기관 협력
-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 7.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이스포츠 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 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 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 2. 이스포츠 전문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 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 4.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 협력
-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높은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96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사행성게임물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14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 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 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 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 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이스포츠 단체, 그 밖에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가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 조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⑥ 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범위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국가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
- 충청북도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지원

####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이스포츠 진흥예획의 수립·시행
- 충청북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 3. 관련조문

- 안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 안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 4. 비용 추계결과

	추계의 전제	추계 결과	재원조달방원		
사	① 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	0천원	- 도비	0천원	
업	② 충북 e스포츠대회	30,000천원	- 도비	30,000천원	
명	③ 충북글로벌 게임센터 운영	2,180,000천원	- 국비 - 도비	1,900,000천원 280,000천원	

<sup>\* 「</sup>이스포츠 진흥계획(제4조)」은 기존사업인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에 포함하여 추진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처워)

구 분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 입		9,5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충북글로벌 게임센터	운영	9,5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세 출		11,050,000	2,210,000	2,210,000	2,210,000	2,210,000	2,210,000
충북글로벌 게임센터	운영	10,900,000	2,180,000	2,180,000	2,180,000	2,180,000	2,180,000
충북 e스포츠대회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수정안)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이스포츠의 저변"을 "이스포츠와 장애인 이스포츠의 저변"으로 한다.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u>이스포츠의 저변</u> 확대·활성화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u>이스포츠와 장애인 이스포츠의</u>
	<u>저변</u> 확대·활성화